

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

한국에 도착하기 3일 전부터(한국 표준 시 기준)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후 7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
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의무자

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(전자입국신고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예외적으로 다음 사람은 제출이 면제 됩니다.

-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(영주권자, 국내거소신고자 포함)
- 유효한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소지한 외국인
- 항공기 승무원 등

* 자세한 내용은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

14세 미만자의 신고 방법

14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.

본인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

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고 내용은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,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본인 책임으로 간주됩니다.

여권 사진 등재(업로드) 방법

여권에서 얼굴사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면을 사진 찍어 파일을 등재해야 합니다. 만일 등재가 어렵다면 인적사항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.

신고 수수료

별도의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.

신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

제출한 신고서는 신고한 내용대로 반영되며, 별도로 신고내용을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여러 사람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여부

한 사람에 신고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9명에 대한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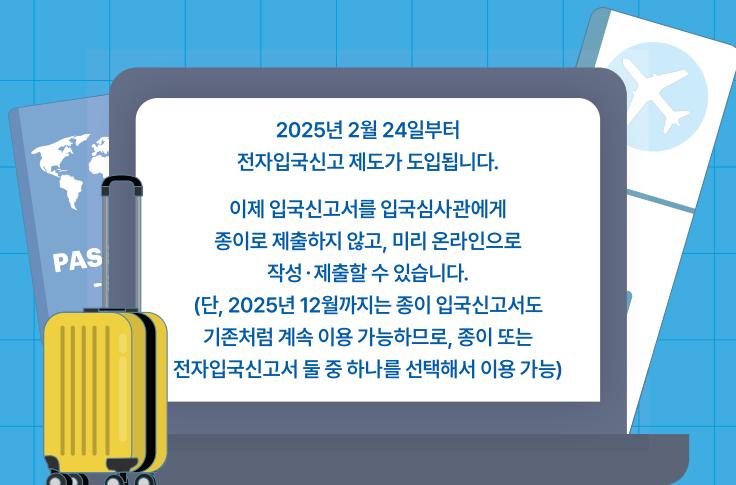
10명 이상의 신고를 일괄해서 하려면 PC 홈페이지에서 단체전자입국신고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입국할 때 신고서를 프린트해서 소지해야 하는지

신고서 PDF파일 등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입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(e-Arrival card) 이용 안내



2025년 2월 24일부터

전자입국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.

이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

종이로 제출하지 않고, 미리 온라인으로

작성·제출할 수 있습니다.

(단,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

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하므로, 종이 또는

전자입국신고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)



법무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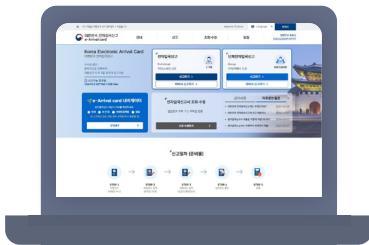
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접속 방법

다음 3가지 방법 중 택1

방법

1

PC에서 www.e-arrivalcard.go.kr에 접속



방법

2

스마트폰에서 www.e-arrivalcard.go.kr에 접속



방법

3

QR코드로 접속



전자입국신고 절차

사전 준비물

여권, 항공(선박) 편명, 체류(숙박) 예정지 주소, 이메일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STEP

1

약관 동의

신고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약관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십시오.

14세 미만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신고해야 하며, 약관 동의도 대리인이 하게 됩니다.

STEP

2

여권 인적면을 찍은 사진 업로드

아래와 같이 여권을 찍은 사진 파일을 등재(업로드) 하시기 바랍니다. 사진에는 반드시 하단의 점선으로 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.



파일을 등재(업로드)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 (OCR 기능)

STEP

3

여행정보 등 입력

입국정보(입국일자, 항공 편명 등), 출국정보(출국예정일, 항공 편명 등), 입국목적,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십시오.

STEP

4

신고서 제출

입력을 모두 마치고 제출버튼을 누르면, 신고가 끝납니다. (수수료는 없으며, 신고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)

제출한 신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서 제출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입국심사 전까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조회·수정할 수 있습니다.

STEP

5

입국

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사전 신고한 전자입국신고서 파일을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